

査証・在留資格

● 入学試験のための「短期滞在」査証

入学試験を受験する目的で日本へ入国する場合には、自国の在外日本国公館で、入国目的を必ず「受験のため」と申告し、「短期滞在」査証（ビザ）を取得して下さい。この査証では収入や報酬を受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 入学のための「留学」査証

【新規入国の場合】

合格者は、本学発行の入学許可書または合格通知書、パスポート、関係書類を在外日本国公館に提出し、「留学」査証を申請して下さい。

また、査証を取得するためには、事前に日本での生活費が確保できることの証明が必要と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すでに日本に滞在している場合】

入学手続き時の在留資格が、「留学」でない場合（「短期滞在」など）は、入学決定後に、入国管理局で「留学」資格に変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在留カード

日本に3ヶ月を超えて滞在する予定の外国人居住者には在留カードが発行されます。在留カードは、原則、成田、羽田、中部及び関西空港に到着する場合は入国審査時に上陸許可に伴い、交付されます。その他の出入国港より入国する場合、居住地区の役所に日本の居住先の届出をした後、登録された住所宛へ在留カードが郵送されます。在留カードは常時携帯する義務があります。

居住地の届出（住民登録）

3ヶ月を超えて日本に滞在する外国人は、入国してから14日以内に居住地区の役所で、居住地の登録（住民登録）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国民健康保険

日本に中長期（3ヶ月を超えて）滞在する外国人は、日本の公的な医療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在留資格「短期滞在」もしくは「留学（在留期間3ヶ月）」の場合は国民健康保険に加入できないため、日本に来る前に、旅行保険等に参加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国民健康保険の加入手続きは、居住地区の市（区）役所・支所で住民登録の後に行います。加入すると、怪我や病気の治療を受ける際に、病院の受付窓口で国民健康保険証を提示すれば、保険診療適用内の医療費についてはその30%を支払うだけで診療を受けられます。国民健康保険料は、家族の有無などの諸条件により異なりますが、例えば、京都市在住の単身の留学生の場合は年間約18,000円の保険料を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

アルバイトについて

留学生は、「資格外活動許可証」を入国管理局で受けた場合に限り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以下の3つの注意点を必ず守ってください。

- ①アルバイトが学業に支障を来さないものであること。
- ②就業時間は、「留学」の在留資格を持つ留学生は一律1週28時間以内（長期休暇中は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週40時間の範囲内であれば1日8時間まで就労することが可能）です。
- ③風俗営業等、公序良俗に反する仕事には従事できません。

許可を得ないでアルバイト活動に従事した場合は、処罰の対象になります。

| 사증 · 비자 |

● 입학시험을 위한 ‘단기체재’ 비자

입학시험을 수험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자국의 재외 일본국 공관에서 입국목적을 반드시 ‘수험을 위해’ 라고 신청하여 ‘단기체재’ 비자를 취득하십시오. 이 비자로는 수입이나 보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입학을 위한 ‘유학’ 비자

【신규 입국의 경우】

합격자는 본교가 발행한 입학허가서 또는 합격통지서, 여권, 관계서류를 재외 일본국 공관에 제출하여 ‘유학’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입학수속시의 재류자격이 ‘유학’ 이 아닌 경우 (‘단기체재’ 등) 는 입학결정 후에 입국관리국에서 ‘유학’ 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재류 카드 |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할 예정인 외국인주거자에게는 재류 카드가 발행됩니다. 재류 카드는 나리타, 하네다, 츄부 및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는 입국심사 시에 상륙허가와 함께 교부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구의 관공서에 일본 거주지 신고를 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재류 카드가 배송됩니다. 재류 카드는 외출 시에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지의 신고 (주민등록) |

3개월 넘게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인, 입국하고나서 14일 이내에 거주지구의 관공사에서 거주지 등록 (주민등록)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일본에 3개월을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인, 일본의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재류 자격이 ‘단기체재’ 혹은 ‘유학 (재류 기간 3개월)’ 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오기 전에 여행보험 등에 가입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수속은 거주지의 시 (구) 관공서 · 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신청 후에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상이나 병을 치료할 시, 병원 접수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 적용 범위내의 의료비에 대해서 30% 만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족의 유무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교토시에 살고 있는 단신 유학생인 경우 연간 약 18,000 엔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

유학생은 사전에 ‘자격외 활동허가’ 를 입국관리국에서 받은 경우에 한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①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② 재류 자격이 ‘유학’ 인 유학생의 노동가능시간은 일률적으로 1주일에 최대 28시간 (장기 휴가중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주 40시간의 범위내라면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 입니다.
- ③ 풍속영업 등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됩니다.